SUMMONS—EVICTION
(소환장—명도소송)

SUM-130 K

FOR COURT USE ONLY
(법원용)

정보 제공 전용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UNLAWFUL DETAINER / FORCIBLE DETAINER / FORCIBLE ENTRY
(불법 점유 / 강제 점유 / 강제 진입)

NOTICE TO DEFENDANT:
(피고에 대한 고지):

YOU ARE BEING SUED BY PLAINTIFF:
(원고가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OTICE! You have been sued. The court may decide against you without your being heard unless you respond within 10 days. You have 10 DAYS, not counting Saturdays and Sundays and other judicial holidays, after this summons and legal papers are served on you to file a written response at this court and have a copy served on the plaintiff. If this summons was served through the Secretary of State's Safe at Home address confidentiality program, you have 15 days from the date of service, not counting Saturdays and Sundays and other judicial holidays, to respond. A letter or phone call will not protect you. Your written response must be in proper legal form if you want the court to hear your case. There may be a court form that you can use for your response. You can find these court forms and more information at the Self-Help Guide to the California Courts (selfhelp.courts.ca.gov), your county law library, or the courthouse nearest you. If you do not file your response on time, you may lose the case by default, and your wages, money, and property may be taken without further warning from the court. There are other legal requirements. You may want to call an attorney right away. If you do not know an attorney, you may want to call an attorney referral service. If you cannot afford an attorney, you may be eligible for free legal services from a nonprofit legal services program. You can locate these nonprofit groups at the California Legal Services website (www.lawhelpca.org), the Self-Help Guide to the California Courts (selfhelp.courts.ca.gov), or by contacting your local court or county bar association.	고지! 귀하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귀하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심리 없이 귀하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소환장 및 법적 서류가 귀하에게 송달된 후 토요일과 일요일 및 기타 사법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본 법원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사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 소환장이 주 국무장관의 Safe at Home 주소기밀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송달된 경우, 귀하는 토요일과 일요일 및 기타 사법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한이나 전화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해 법원 심리를 받고자 할 경우, 적절한 법적 양식으로 서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서 작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원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 양식 및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법원 셀프 헬프 가이드(selfhelp.courts.ca.gov), 해당 카운티 법률 도서관 또는 가까운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시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궐석으로 패소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가 경고 없이 임금, 금전 및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적 요건들도 있습니다. 귀하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변호사 의뢰 서비스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비영리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 대상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비영리 그룹은 캘리포니아 법률 서비스 웹사이트(www.lawhelpca.org), 캘리포니아 법원 셀프 헬프 가이드(selfhelp.courts.ca.gov), 또는 해당 지역 법원이나 카운티 변호사 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FEE WAIVER: If you cannot pay the filing fee, ask the clerk for a fee waiver form. NOTE: The court has a statutory lien for waived fees and costs on any settlement or arbitration award of $10,000 or more in a civil case. The court's lien must be paid before the court will dismiss the case.	수수료 면제: 제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서기에게 수수료 면제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주의: 민사 사건에서 $10,000 이상의 합의금 또는 중재판정금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면제된 수수료 및 비용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에 법정담보권을 갖습니다. 법원이 해당 사건을 각하하기 전에 법원의 담보권이 먼저 변제되어야 합니다.

1.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ourt is:
(법원 이름 및 주소):

CASE NUMBER (사건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2. The na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plaintiff's attorney, or plaintiff without an attorney, is: (원고의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없는 원고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원고 (이름):	사건 번호: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피고 (이름):	

3. (모든 사건에서 답변 필수) 불법 점유 조력자(사업직업법, §§ 6400-6415)가 이 양식 작성에 있어 보상을 받고 조언이나 도움을
☐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제공했습니다. (원고가 불법 점유 조력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어떠한 도움 또는 조언을 받았을 경우, 아래 항목 4를 작성하십시오.)
4. 불법 점유 조력자 (원고가 불법 점유 조력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어떠한 도움 또는 조언을 받았을 경우 작성):
 a. 조력자 이름:
 b. 전화번호:
 c. 거리 주소, 시 및 우편번호:
 d. 등록 카운티:
 e. 등록 번호:
 f. 등록 만료일 (날짜):

날짜: 서기, 서명 , 서기보

(이 소환장 송달에 대한 증빙은 소환장 송달 증명서(양식 POS-010)을 사용하십시오.)

[날인]

5. 송달 수령인에 대한 통지: 귀하는 다음의 자격으로 송달받으셨습니다.
 a. ☐ 개인 피고.
 b. ☐ 다음의 가명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람. (자세히 기재):
 c. ☐ 점유자.
 d. ☐ 다음 대상의 대리인. (자세히 기재):

근거 조항
- ☐ 민사소송법 제416.10조 (법인).
- ☐ 민사소송법 제416.20조 (파산 법인).
- ☐ 민사소송법 제416.40조 (조합 또는 합명·합자회사).
- ☐ 민사소송법 제415.46조 (점유자).
- ☐ 민사소송법 제416.60조 (미성년자).
- ☐ 민사소송법 제416.70조 (피후견인).
- ☐ 민사소송법 제416.90조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
- ☐ 기타 (자세히 기재):

 e. ☐ 다음 날짜에 직접 송달받음 (날짜):

영어 버전만 온라인 입력 가능.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양식을 인쇄한 후, 이 양식 지우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인쇄 저장 지우기